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

〔 1996. 4. 30
훈령 제886호 〕

전문개정	2005.	10.	10	규정 제1256호
전문개정	2006.	11.	01	규정 제1309호
개정	2008.	8.	13	규정 제1373호
개정	2009.	3.	17	규정 제1403호
개정	2009.	9.	14	규정 제1424호
개정	2009.	10.	26	규정 제1426호
개정	2010.	11.	02	규정 제1461호
개정	2011.	1.	31	규정 제1468호
개정	2011.	5.	31	규정 제1483호
개정	2011.	9.	14	규정 제1491호
개정	2011.	11.	25	규정 제1493호
개정	2012.	4.	27	규정 제1522호
개정	2013.	2.	12	규정 제1556호
개정	2013.	5.	14	규정 제1581호
개정	2013.	11.	11	규정 제1600호
개정	2014.	2.	28	규정 제1626호
개정	2014.	5.	26	규정 제1637호
개정	2014.	12.	16	규정 제1660호
개정	2015.	1.	19	규정 제1675호
개정	2015.	2.	27	규정 제1684호
개정	2015.	7.	10	규정 제1711호
개정	2015.	10.	12	규정 제1722호
개정	2016.	11.	1.	규정 제1778호
개정	2017.	2.	28	규정 제1801호
개정	2017.	5.	22	규정 제1809호
개정	2017.	12.	15	규정 제183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학칙』 (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대학교에 두는 부속시설 중 연구소와 연구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시설 중 연구소와 연구원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연 구 소

제3조(연구소의 구분) ①우리 대학교에 두는 연구소는 학문중심연구소, 주제연구소 및 정책연구소로 구분한다.

②학문중심연구소라 함은 학문발전과 연계한 순수 연구·개발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연구소를 말한다.

③주제연구소라 함은 특정 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연구소를 말한다.

④정책연구소라 함은 국가 및 지역발전과 연계한 특정 정책의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되는 연구소를 말한다.

제4조(연구소와 연구센터의 설립) ①연구소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 부설연구소로 한다. (개정 2008. 8. 13)

②학문중심연구소의 설립은 학문단위와 연계하여 15명 이상의 전임교원의 동의에 의해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주제연구소와 정책연구소는 제5조의 설립절차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

④연구센터는 연구소 내의 특정 분야 연구를 위하여 연구소 산하에 설립할 수 있으며, 센터의 설립과 폐지는 해당 연구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설립절차) ①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추진위원장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6월 또는 12월 말일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제연구소와 정책연구소는 연구비 수주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 제출 시기를 예외로 할 수 있다.

1. 연구소 설립계획서(연구소 명칭, 설립목적, 시설, 인력, 운영계획, 재정확보 계획, 기대효과 등 포함)
2. 전임교원 15인 이상의 설립동의 서명 연명부
3. 기타 연구소 설립에 관련된 자료

②연구소 설립은 학술연구위원회와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6조(책임연구원, 자문위원 및 교수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책임연구원, 자문연구

위원, 교수연구원, 전임연구교수, 객원연구원, 명예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보조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을 둘 수 있다.

①책임연구원은 학문중심연구소에 소속하여 당해 연구소에 부과된 책임과 의무를 갖는 전임교원을 지칭한다. 대학의 전임교원은 반드시 학문중심연구소 중 하나에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소속된 학문중심연구소에서 연구소 업적 평가 대상의 주체가 되고 연구에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책임연구원은 타 연구소의 교수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자문연구위원은 국내·외 해당 학문 분야에 현저히 기여한 자 중에서,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교수연구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외부 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 11. 1.)

④전임연구교수는 학문중심연구소에 두며,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임용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⑤객원연구원은 국내·외 산업체, 학교, 연구소에 직을 두고 있거나 해당 분야의 우수한 전공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명예연구원은 연구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산업체의 장 또는 임원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박사후연구원은 연구소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⑧전임연구원은 연구를 주 업무로 담당하는 연구원으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⑨보조연구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⑩전문연구요원은 병무청장이 지정한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석사이상의 자격 소지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연구소 조직 및 직무) ①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해당 연구소의 규정에 따라 부소장, 부(실)장 및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부(실)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관장한다.

⑤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소장 등의 임명) ①학문중심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 책임연구원 중에서 호선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주제연구소의 소장과 정책연구소의 소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교내·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연구소의 부소장과 부(실)장은 연구소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연구소의 간사는 연구소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개정 2010. 11. 02)

③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역할과 책임) ①학문중심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전임교원의 제반 연구 활동에 관한 사업을 지원한다.

1. 국내외 연구방문
2. 연구(사업)계획서 제출 및 성과 관리
3. 연구업적 관리
4.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사업

5. 기타 연구 관련 사항

②연구소장은 연구(사업)계획서 제출과 연구사업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연구소) 학칙 제12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연구시설 중 연구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 11. 1.)

제3장 연 구 원

제11조(연구원의 설립) 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학술연구 진흥을 위하여 시설 공간, 인력, 재정보조 계획 등이 명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할 수 있다.

1. 연구소간 협력연구 및 학제 간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구소의 통합 행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학문단위의 연구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설립절차) ①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추진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6월 또는 12월 말일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 필요성, 기본사업,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이 기재된 설립계획서
2. 관련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설립동의서
3. 향후 2년간 세부사업계획서
4. 시설공간을 제공하는 기관장의 동의서
5. 연구원 설립에 관련된 기타 자료

②연구원 설립은 학술연구위원회와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3조(연구원 조직 및 직무) ①연구원은 『학칙』 제12조제1항 별표3에 규정된 2개 이상의 연구소를 포함한 연구시설로 구성한다.

②연구원에는 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③원장은 연구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간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원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원장 등의 임명) ①원장은 연구를 구성하는 연구소 부교수 이상의

책임연구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연구원의 간사는 연구원을 구성하고 있는 연구소 책임연구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원장과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원장과 연구원을 구성하는 연구소의 소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국내·외 해당 학문분야에 현저히 기여한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의2(연구원) 학칙 제12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연구시설 중 연구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3. 17.)

제4장 보 칙

제17조(임명사항 보고) ①소장이 부소장·부(실)장·운영위원 및 교수연구원 등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원장이 간사, 운영위원 등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연구소의 운영은 연구 간접경비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행·재정적으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단, 재정 자립이 어려운 학문중심연구소는 학술연구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연구원의 운영은 참여 연구소간의 협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한다.

제19조(평가) ①연구소와 연구원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연구소와 연구원에 대한 평가항목, 방법,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술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평가결과는 각종 행·재정 지원, 통폐합과 존속 여부의 결정에 반영한다.

제20조(폐지)총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소와 연구원을 학술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1. 평가결과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2. 사업수주 목적으로 설립된 주제연구소는 해당사업이 종료된 경우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회계년도) 연구소와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학년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연구소와 연구원에 관련된 기타 중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 또는 원장이 시행한다.

부 칙(2005. 10. 10 규정 제1256호)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는 이 규정에 의한 연구소로 본다.

부 칙(2006. 11. 01 규정 제1309호)

- ①(시행일)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충남대학교생명과학연구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8. 8. 13. 규정 제137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7. 규정 제140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14. 규정 제142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6. 규정 제142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02. 규정 제146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1. 31. 규정 제146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5. 31. 규정 제148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9. 14. 규정 제149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25. 규정 제149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4. 27. 규정 제152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2. 12. 규정 제155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5. 14. 규정 제158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11. 규정 제160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28. 규정 제162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26. 규정 제163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6. 규정 제166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9. 규정 제167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7. 규정 제168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10. 규정 제17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12. 규정 제172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1. 규정 제177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28. 규정 제180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22. 규정 제180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15. 규정 제183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현황

교사시설구분	유형	소속	시설명
연구시설	학문중심 연구소	충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공업교육연구소, 교육연구소, 뇌과학연구소, 동물 의과학연구소, 백제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생물공학연구소, 생활 과학연구소, 소재화학연구소, 소프트웨어연구소, 수리과학연구소, 암연구소, 양자제어물성연구소, 예술문화연구소, 의공학연구소, 의 약품개발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첨단수송체연구소, 체육과학연 구소, 충청문화연구소, 해양연구소, 환경·생물시스템연구소, 사회기 반시설기술연구소, 신약개발연구소
		인문대학	인문과학연구소
		경상대학	경영경제연구소
		공과대학	건설방재연구소, 건축연구소, 나노공학연구소, 바이오응용화학연 구소, 전파전기공학연구소, 정보통신연구소
		농업생명과 학대학	농업과학연구소
		의과대학	의학연구소
		법학전문 대학원	법학연구소
	주제 연구소	분석과학 기술대학원	분석과학기술연구소
		충남대학교	감염제어컨버전스연구센터, 고기능성자성재료연구센터, 과학수사 연구소, 국가전략연구소, 국방연구소, 국방위성항법특화연구센 터, 국제기술협력연구소, 국제수자원연구소 급속응고신소재연구 소, 다문화교육연구소, 독감바이러스연구소, 동서문명연구소, 북미 주연구소, 아시아여론연구소, 생체신호네트워크연구소, 시민사회 연구소, GSP채소종자사업단, 신소재연구소, 아시아지역연구소, 여 성정책연구소, 유학연구소,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 인터넷침해 대응기술연구센터, 전자과환경기술연구센터, 종합군수체계연구소, 중독행동연구소, 중소기업정책연구소, 철도연구소, 한자문화연구 소, 형질전환복제돼지연구센터, 회계연구소, 안보문제연구소, 차세 대회로기관연구소, 평화안보연구소, 발명교사 교육센터, 의생명연 구분석센터,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대전센 터, 스포츠융복합창업육성사업단, 대전광역시야생동물구조센터, 금연연구센터, 프랑스어문화권연구소, 독일어문화권연구소, 핀테 크보안연구센터, 과학기술지식연구소, 능력중심교육과정·교과서연 구소
		공과대학	산업기술연구소
	정책 연구소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한국정치연구소, 통일문제연구소, 국가정책연구소
		법학전문 대학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별표 2]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원 현황

교사시설구분	유형	소속	시설명
연구시설	연구원	충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인문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원